

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

중소기업청 올해 총 3조원 규모, 업체당 50억원 한도 지원

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 금을 지원하는 '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'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(15개) 등에서 신청ㆍ접수를 받는다. 지원되는 자금의 내용별로는 구조개선자금 1조 7,500억원, 중소ㆍ벤처창업자금 3,500억원,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,100억원,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800억원,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700억원,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,400억원 등이다.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.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(http://www.smba.go.kr) 및 중소기업진흥공단(http://www.sbc.or.kr)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있다. 본 고에서는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. [편집자 주]

공통사항

★ 지원기준

- 가. 지원대상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(세부사항은 각 자금에 서 규정)
- ※ 금융,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 업, 사치향락적 소비자나 투기 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

나. 지원제한

-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 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 안내 참조)을 초과하는 기업 (협동화 사업은 실천계획 승 인신청시 기준)
- ※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
 - 업력 3년 미만,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%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, 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, 매출

- 액이 10%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기업, 소득세법 및 동 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
-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 록 공장(협동화사업은 예외)
- ※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인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간주
 -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 중소기업
 -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 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(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외)
 -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 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 출 업체
- ★지원한도 : 중소기업진흥 및 산 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

-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50억원 (또는 매출 액의 125%)
- ※ 구조개선사업(시설), 지식기반 서비스육성사업(시설), 중소· 벤처창업 자금의 경우는 잔액기 준 한도만 적용
- ★지원방식 :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·접수하여 보증서부 또는 순수 신용대출 : 특별경영 안정사업,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, 수출금융지원사업 등
 - ※ 중소·벤처창업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 신용보증기금(기술 평가센터)에서 직접 신청·접 수,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 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·접수 가능
- ★ 신청 · 접수기간 : 2005. 1. 10~ 자금소진시까지
- ※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

정한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 센터에서 접수 · 추천

구조개선자금

- ★사업목적 :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 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 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
- **★ 지원규모**: 17,500억원

★ 지원대상

- **가. 구조개선사업 :**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
 - 지원제외업종 : 사치향락, 건설, 소매업 등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)
 - 다만, 제조업 전업률 30% 이 상 업체 및 지원제외 대상 업 종업체 중 지원대상 업종으 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에 포함
- 나.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: 중소 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 업(전업률 30% 이상. 단, s/w업 종은 예외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다. 특별경영안정사업 :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중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% 이상 피해, 거래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발생, 사업성, 기술성은 있으나업종별 지원제한부채비율 초과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, 최종부도 발생기업, 금융기관·신용보증불량기업,화의 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.

자본잠식기업 등

★ 지원범위

가. 구조개선사업

- 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
- 기업간 인수 · 합병 추진 자금 등 구조조정자금
-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 동비 및 구조조정(개발기술도 입비등)을 위한 우전자금

나.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

-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자금
- 원부자재 구입비용, 연구개발 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

다. 특별경영안정사업

- 재해,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 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★ 지원조건

가. 구조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

- 대출금리: 4.4%, 중소기업진 흥공단 신용대출은 4.9% 이 내,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자금(시설, 운전자금)의 신용 대출은 4.4%(변동금리)
- ※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은 4.4%(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 출은 4.9%)
 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 내 (거치기간 3년 포함)
 운전자금 3년 이내 (거치기간 1년 포함)
 - 대출한도 : 구조개선사업 : 업 체당 연간 총 30억원(운전자

금은 5억원)/지식기반서비스 업육성사업: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- 지원방법: 중소기업진흥공간 이 신청·접수·지원결정 후 담보부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 또는 순수신용

다. 특별경영안정사업

- 대출금리 : 회생특례자금 7.9%, 원부자재구입자금 4.9%(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대출은 5.4%), 재해복구자금 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름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3년 이내(거치기 간 1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 원(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)
- 지원방법: 신용 및 신용보증 서로 중소기업진흥공간이 직 접대출(기업편의에 따라 은행 을 통한 대출 가능)
- ★ 신청 · 접수기간 : 중소기업진흥 공단 지역본부

중소·벤처창업자금

- ★사업목적 :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니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
- ★ 지원규모: 3,500억원

★ 지원대상

- 창업을 준비 중인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 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



정책자금정보

기준)인 중소기업

※ 지원제한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숙박 및 음식점 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 장 운영업, 도박장 운영업, 미 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)

★ 지원범위

- 생산·연구시설, S/W, 중고 시설, 사업장확보자금, 건축 공사비(토지구입비 제외) 등
- 연구개발비용, 생산에 필요한 워부자재 구입비용 등

★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4.4%, 중소기 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4.9% 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은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/운 전자금은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 원(운전자금은 5억원)
- 지원절차 :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(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 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현장실 사를 통하여 평가후 직접 대 출), 신용보증부 대출(신용보 증기관이 신청·접수와 함께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심 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 단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)

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

★사업목적: 서비스산업등 소상공 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지원

★ 지원규모: 5,100억원

★ 지원대상

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- (*지원제외 대상 : 금융 · 보험 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를 조장하는 업종)
- ★지원범위 : 소상공인 창업 및 경 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 금

🖈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4%(변동금리)
- 대출한도 : 5천만원
-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- 상환방식: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 다 균등 분활 상환하고 30% 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
- 대출취급은행 :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외환, 조흥, 한미, 하나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은행, 농협
- 지원방법 : 대출취급 금융기 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 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 전절차를 거쳐 대출

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

★사업목적 :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 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·사업 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 소기업 육성

★ 지원규모: 800억원

★ 지원대상

-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 업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 고자 하는 기업: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(완료)한 기술, 중소기업청 선 정 Inno-Biz 업체 보유기술
- ※ 기술혁신개발사업등 중소기업 청 시행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과 Inno-Biz 업체는 우대
 -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
- ※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 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 술 포함
 -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 전반은 기술
 -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 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 도 참여업체 보유기술

★ 지원범위

- 개발기술의 제품 양산에 소 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 설비 등

-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개척비용 등

★ 지원조건

- 대출금리: 연 4.4%(변동금리)
 ※ 신용등급 'C'를 기준금리
 (4.4%)로 하고 'C'보다 우수등
 급일 경우 -0.5%p 할인금리,
 아래등급일 경우 +0.5%p 할증 금리 적용
 - 대출기한 : 5년 이내(거치기 간 2년 포함)
 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5억 원(운전자금은 3억원)
 - 지원방법: 중소기업진흥공단
 의 신청·접수를 통해 기술신
 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및
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

수출금융 지원자금

- ★사업목적 :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 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 제발전 도모
- ★ 지원규모: 700억원
- ★지원대상 : 수출계약 중소기업 (*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 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)

★ 지원범위

신용장기준 포괄금융 :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, O/A)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등소요비용지원(수출계약액

- 의 90% 이내)
- 실적기준 포괄금융 :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/2 이내로 5억원 한도
- (*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 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 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 지원)

★ 지원조건

- 지원금리 : 연 4.6%(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)
- 지원기간 : 180일 이내(실적 기준 포괄금융-대출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/ 신용장기준 포괄금융-수출 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)
- 지원방식: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 전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

협동화 자금

- ★사업목적 :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, 공해방지시설,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설치 등을 지원
- **★ 지원규모**: 2,400억원
- ★지원대상: 아래 지원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
- ※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 업인력지원특별법 24조에 의한 공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

지원 우대

- ※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 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
- **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 는 참가업체수의 1/2범위 이내 로 제하
- ※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 인 자, 휴·폐업 중인 자, 실천 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★ 지원범위

- 시설자금 : 건물·부지매입 비, 임차보증금,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(추진주체 50억원 이내, 참가업체 40억 원 이내)
- 운전자금 : 사업장 준공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(추진주체 는 10억원 이내,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)
- 협업화 자금 : 판로개척, 원자 재 구매, 기술개발,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(추진주체 30 억원 이내, 참가업체 20억원 이내)

★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4.4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은 10년
 (거치기간 5년 포함)/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은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


정책자금정보

문의 및 신청 · 접수기관 연락처

★ 중소기업청

표 1 참조

★ 중소기업진흥공단

표 2 참조

★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

표 3 참조

★ 지역신용보증재단

표 4 참조

★ 인터넷 이용 안내

표 5 참조

『광학세계』원고모집

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'광학세계'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 습니다.

'광학세계'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, 학계,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• • • 원고모집 안내 • • •

1. 원고내용: 연구논문, 회사소개, 제품소개, 국내·외 기술동향, 이달의 독자. 수필 등

2. 원고분량 : 제한 없음

3. 원고마감 : 수시 접수중

※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.

• 연락처 : 한국광학기기협회

'광학세계'편집부 • Tel. (02)3481-8931

• Fax. (02)3481-8669

표 1. 중소기업청

지방중기청	전 화	지방중기정	전 화
서 울	02)509-7018/9	경 기	031)201-6800/2
충 북	043)230-5300	부산 · 울산	051)601-5111
대전 · 충남	042)865-6100	전 북	063)210-6400
대구 · 경북	053)626-2601	인 천	032)818-8321
경 남	055)268-2511	광주 · 전남	062)360-9109
강 원	033)260-1600	제 주	064)723-2101

표 2. 중소기업진흥공단

지역본부	전 화	지역본부	전 화
서 울	(02)769-6602/8	대전 · 충남	(042)866-0114
울 산	(052)277-3283	부 산	(051)630-7431/5
충남출장소	(041)531-7493/4	강 원	(033)256-9611/3
대구 · 경북	(053)601-5273/9	경 기	(031)259-7921/9
원 주출 장소	(033)735-3344	인 천	(032)450-0522/4
경기 · 북부	(031)920-6723/6	강 릉	(033)646-9967/8
광주전남	(062)600-3017/9	충 북	(043)230-6812/4
전 북	(063)210-9922/4	경 남	(055)269-5821/4
제 주	(064)751-2055/7		

표 3.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

지 역	전화번호	지 역	전 화 번 호
서 울	(02)789-9287/789-9297	광 주	(062)361-0630
서울(강남)	(02)567-6800	서울(강동)	(02)3401-4025
서울(중부)	(02)754-3591	대 전	(042)483-2993/6
 부 산	(051)466-4115	경 기	(031)215-1560
대 구	(053)424-6970	인 천	(032)438-9080

표 4. 지역신용보증재단

지	역	전 화 번 호	지 역	전 화 번 호
서	울	(02)563-0673	경기(수원)	(031)259-7700
부	산	(051)831-1183	강원(춘천)	(033)251-1353
대	구	(053)554-5300	경남(창원)	(055)263-2262/4
인	천	(032)260-1500/3	경북(구미)	(054)474-7100
광	주	(062)950-0011	전남(순천)	(061)743-0365
대	전	(042)864-1701/6	충남(아산)	(041)541-9833
울	산	(052)289-2300	충북(청주)	(043)236-2691
제	주	(064)758-5740		

표 5. 인터넷 이용 안내

• 중소기업청 : www.smba.go.kr• 중소기업진흥공단 : www.sbc.or.kr• 기술신용보증기금 : www.kibo.co.kr• 정책자금안내시스템 : www.finainfo.go.kr• 소상공인지원센터 : www.sbdc.or.kr